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67
----------	------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발의자 : 이양수 · 이인선 · 배준영  
정희용 · 김선교 · 조경태  
박덕흠 · 서천호 · 이상휘  
나경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  
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  
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자”를 “어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감척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고 감척어업자의 주요 포획어종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척어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폐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u>어업자</u>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2. (생략)  <u>&lt;신 설&gt;</u></p>	<p>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  -----  -----  ----- <u>어업자</u>(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척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고 감척어업자의 주요 포획 어종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척어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u></p>

	<p>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폐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u>----- ----- ----- ----- ----- -----.</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u>제5항</u>----- ----- -----.</p>
<p>② <u>제1항</u>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제4항</u>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u>제13조제1항</u>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 ----- ----- <u>제13조제1항 및 제2항</u>----- ----- ----- ----- ----- -----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